

## 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건설애(愛)통장』 특약(구 하나은행)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약관명에 구행명 삭제, 조항명 변경, 가입대상에 개인사업자 추가, 행명 변경

### 중복가입 불가 문구 삭제, 급여이체 주식 추가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 style="color: red;"><b>『건설애(愛)통장』 특약(구 하나은행)</b></p> <p><b>제 1 조 약관의 적용</b> “건설애(愛)통장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『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』, 『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(구 하나은행)』 을 적용합니다.</p> <p><b>제 2 조 예금과목</b> (생략)</p> <p><b>제 3 조 가입대상 및 제한</b>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<u>개인</u>으로 1인 1통장을 원칙으로 하며 타 수수료 통장과 중복가입은 불가합니다.</p> <p><b>제 4 조 필수조건</b> 이 예금에서 제공하는 금리 우대 및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. - 월 평잔 50만원 유지 시 - 이 예금에서 <u>하나은행</u> 적금상품으로 매월 자동이체 실적에 있는 경우 - 이 예금으로 예금 가입자가 지정한 날에 타인으로 부터 50만원 이상 <u>급여이체</u> 시</p> <p><b>제 5 조 이자지급</b> (생략)</p> <p><b>제 6 조 수수료 우대</b> ① 은행은 가입 다음월부터 제 4조의 필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한 월의 다음월 1일부터 말일까지 아래 수수료 우대서비스 1을 월 10회 제공합니다. 단 신규 가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월 10회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1을 제공합니다. (수수료 우대서비스 1 대상거래)</p>	<p style="color: red;"><b>『건설애(愛)통장』 특약</b></p> <p><b>제 1 조 적용범위</b> “건설애(愛)통장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 및 『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』을 적용합니다.</p> <p><b>제 2 조 예금과목</b> (좌동)</p> <p><b>제 3 조 가입대상</b>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<u>개인 또는 개인사업자</u>이며,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</p> <p><b>제 4 조 필수조건</b> 이 예금에서 제공하는 금리 우대 및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. 1. 월 평잔 50만원 유지 시 2. 이 예금에서 <u>KEB하나은행</u> 적금상품으로 매월 자동이체 실적에 있는 경우 3. 이 예금으로 예금 가입자가 지정한 날에 타인으로 부터 50만원 이상 <u>급여이체</u><sup>㉞</sup> 시 <u>㉞ 급여이체 인정기준(생략, 변경 후 특약 참조)</u></p> <p><b>제 5 조 이자지급</b> (좌동)</p> <p><b>제 6 조 수수료 우대</b> ① 은행은 가입 다음월부터 제 4조의 필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한 월의 다음월 1일부터 말일까지 아래 수수료 우대서비스 1을 월 10회 제공합니다. 단 신규 가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월 10회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1을 제공합니다. (수수료 우대서비스 1 대상거래)</p>	<p>구행명 삭제</p> <p>조항명 변경</p> <p>구행명 삭제</p> <p>조항명 변경</p> <p>개인사업자 문구 추가</p> <p>중복가입 불가 삭제</p> <p>행명 변경</p> <p>급여이체 주식 추가</p>

